사업방법서 별지

(미니생활보험)

1. 보험의 종류

특종(상해)/상해

2. 보험목적에 관한 사항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신체
나. 법률상의 배상책임
다. 자동차에 관련하여 생기는 피보험자의 각종 위험에 관한 피보험이익

3. 보험기간

가.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6. 기타 필요한 사항'의 '타'항에서 정한 상품명 별칭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보험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계약체결일에 따라 3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 '나'항의 경우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라'항 '1)'호에서 정한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계약
- 계약을 체결한 날의 해당 연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라'항 '2)'호에서 정한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계약
- 계약을 체결한 날의 해당 연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라'항 '3)'호에서 정한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계약
- 계약을 체결한 날의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라'항 '4)'호에서 정한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계약
- 계약을 체결한 날의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다만,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가 윤년인 경우 2월 29일까지로 한다.)

라. '나'항 및 '다'항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은 다음과 같다.
1) 봄철 특정감염성질환 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봄철 다빈도질환(호흡계질환) 입원일당 특별약관, 봄철 다빈도질환(호흡계질환) 수술비 특

별약관

2) 여름철 특정감염성질환 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여름철 다빈도질환(피부 및 근골격계질환) 입원일당 특별약관, 여름철 다빈도질환(피부 및 근골격계질환) 수술비 특별약관, 여름철 수족구 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여름철 식중독 진단비(2일이상 입원) 특별약관, 여름철 음식매개 세균성장염진단비(4일이상 입원) 특별약관, 여름철 기후성질환(온열질환)진단비(월1회한) 특별약관
3) 가을철 특정감염성질환 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가을철 다빈도질환(호흡계 및 특정 소화계질환) 입원일당 특별약관, 가을철 다빈도질환(호흡계 및 특정 소화계질환) 수술비 특별약관
4) 겨울철 특정감염성질환 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겨울철 다빈도질환(호흡계질환) 입원일당 특별약관, 겨울철 다빈도질환(호흡계질환) 수술비 특별약관, 겨울철 기후성질환(한랭질환)진단비(월1회한) 특별약관, 겨울철 독감(인플루엔자)(10일면책) 항바이러스제 치료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4.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료영수증과 상환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영수할 수 있다.

5.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6. 기타 필요한 사항

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판매 형태에 관한 사항

- 보험업법 제 83 조(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의 제 1 항 제 4 호에서 정한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 제외) 또는 직원』을 판매자로 하고,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를 통하여 청약(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한합니다) 및 가입하는 경우

다. 사망을 보장하는 담보 운용에 관한 사항

-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만기는 80세 이하이며,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한다.

라. 납입주기 : 일시납

마. 보험가입 제한에 관한 사항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

바.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적용근거 : 이 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 적용범위 :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기타
  1)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
  2)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

사. 다음의 특별약관을 모두 가입하는 계약에 대하여 상품명 별칭으로 「미니레저보험」을 사용할 수 있다.
- 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
-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아. 다음의 특별약관을 모두 가입하는 계약에 대하여 상품명 별칭으로 「미니자전거보험」을 사용할 수 있다.
- 자전거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 자전거사고 벌금 특별약관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 자전거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사망, 동승자 제외) 특별약관

- 자전거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이상), 동승자 제외) 특별약관
- 자전거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 동승자 제외) 특별약관

자. 다음의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계약에 대해서 반복적인 취미활동 또는 동호회 활동 여부가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운영한다.(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고압산소요법치료비(급여, 연간1회한) 특별약관

차. 다음의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계약에 대하여 상품명 별칭으로 「수도권지하철지연보험」을 사용할 수 있다.
- 수도권 지하철 지연 손해 추가비용 특별약관

카. 다음의 특별약관은 다른 보장내용 없이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다.
- 수도권 지하철 지연 손해 추가비용 특별약관

타. 다음의 각 계절별로 1)~3)에 해당하는 특별약관을 1개 이상 가입하는 계약에 대하여 상품명 별칭으로 「4계절보험 ( )」, 「4계절케어 ( )」 또는 「시즈널케어 (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 )에 적용하는 별칭은 봄/여름/가을/겨울 중 하나로 하며, 각 계절별 특별약관을 가입할 때 다른 계절에 해당하는 특별약관을 함께 가입할 수 없다.
- 계절(봄)
  1) 봄철 특정감염성질환 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2) 봄철 다빈도질환(호흡계질환) 입원일당 특별약관
  3) 봄철 다빈도질환(호흡계질환) 수술비 특별약관
- 계절(여름)
  1) 여름철 특정감염성질환 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2) 여름철 다빈도질환(피부 및 근골격계질환) 입원일당 특별약관
  3) 여름철 다빈도질환(피부 및 근골격계질환) 수술비 특별약관
- 계절(가을)
  1) 가을철 특정감염성질환 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2) 가을철 다빈도질환(호흡계 및 특정 소화계질환) 입원일당 특별약관
  3) 가을철 다빈도질환(호흡계 및 특정 소화계질환) 수술비 특별약관
- 계절(겨울)
  1) 겨울철 특정감염성질환 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2) 겨울철 다빈도질환(호흡계질환) 입원일당 특별약관
  3) 겨울철 다빈도질환(호흡계질환) 수술비 특별약관

파. 다음의 특별약관을 1개 이상 가입하는 계약에 대하여 상품명 별칭으로 「틈만 나면 ( )」을 사용할 수 있다.
( )에 적용하는 별칭은 판매채널, 플랫폼, 플랜, 부가특약 등에 따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 업무외 상해 사망 특별약관
- 업무외 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 화상진단비(심재성2도이상) 특별약관
-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 깁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 특별약관
- 상해 응급실내원 진료비(응급) 특별약관
- 상해 중환자실 입원보상(1일이상) 특별약관
- 자전거사고 벌금 특별약관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 자전거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사망, 동승자 제외) 특별약관
- 자전거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이상), 동승자 제외) 특별약관
- 자전거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 동승자 제외) 특별약관
- 차대자전거사고 자전거파손(자기과실손해) 수리비용 특별약관
- 식중독 진단비(2일이상 입원) 특별약관
- 음식매개세균성장염진단비 특별약관
- 특정감염병진단비 특별약관
- 얼굴성형수술비 특별약관
- 강력범죄보상 특별약관
- 폭력피해보상 특별약관
- 기후성질환(온열질환)진단비 특별약관
- 기후성질환(한랭질환)진단비 특별약관
- 독액성동물접촉중독진단비 특별약관
- 골절진단비(머리·얼굴·목 부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 골절진단비(가슴·등 부위) 특별약관
- 골절진단비(어깨·팔 부위) 특별약관
- 골절진단비(허리·골반 부위) 특별약관
- 골절진단비(손·손목 부위) 특별약관
- 골절진단비(발·발목·다리 부위) 특별약관
- 골절수술비(머리·얼굴·목 부위) 특별약관

- 골절수술비(가슴·등 부위) 특별약관
- 골절수술비(어깨·팔 부위) 특별약관
- 골절수술비(허리·골반 부위) 특별약관
- 골절수술비(손·손목 부위) 특별약관
- 골절수술비(발·발목·다리 부위) 특별약관
- 상해 근골격계(머리·얼굴·목 부위) 손상 수술비 특별약관
- 상해 근골격계(가슴·등 부위) 손상 수술비 특별약관
- 상해 근골격계(어깨·팔 부위) 손상 수술비 특별약관
- 상해 근골격계(허리·골반 부위) 손상 수술비 특별약관
- 상해 근골격계(손·손목 부위) 손상 수술비 특별약관
- 상해 근골격계(발·발목·다리 부위) 손상 수술비 특별약관
- 상해 근골격계(발·발목·다리 부위) 손상 수술비 특별약관
- 창상봉합술 치료비(1일 1회한) 특별약관

하. 다음의 특별약관을 1개 이상 가입하는 계약에 대하여 상품명 별칭으로 「러닝보험 ( )」 또는 「( ) 러닝보험」을 사용할 수 있다.
( )에 적용하는 별칭은 판매채널, 플랫폼, 플랜, 부가특약 등에 따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 인공호흡기(12시간초과) 치료비(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 저체온요법 치료비(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 골절(치아파절제외) 부목치료비 특별약관
- 상해 골절(치아파절제외) 재활치료비(단순재활)(급여)(1일1회, 연간5회한) 특별약관
- 상해 골절(치아파절제외) 재활치료비(전문재활)(급여)(1일1회, 연간3회한) 특별약관
- 상해 골·관절 도수정복술 치료비(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 상해 골절(치아파절제외) 철심제거 수술비(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 상해 골·관절 고정술 치료비(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 상해 골절(치아파절제외) CT검사비(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 상해 골절(치아파절제외) MRI검사비(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 특정 관절,연골 및 인대 관련질환 수술비 특별약관
- 특정 근육 및 힘줄 관련질환 수술비 특별약관
- 특정 뼈 및 조직 관련질환 수술비 특별약관
- 특정 무릎 다빈도질환(러너스니) 수술비 특별약관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연간1회한) 특별약관
- 골절 진단비(머리·얼굴·목 부위)(치아파절 제외)(연간1회한) 특별약관
- 골절 진단비(가슴·등 부위)(연간1회한) 특별약관

- 골절 진단비(어깨 · 팔 부위)(연간1회한) 특별약관
- 골절 진단비(허리 · 골반 부위)(연간1회한) 특별약관
- 골절 진단비(손 · 손목 부위)(연간1회한) 특별약관
- 골절 진단비(발 · 발목 · 다리 부위)(연간1회한) 특별약관

거. 하나의 계약에 있어서 다음의 특별약관(A)와 각 특별약관(A)에 상응하는 특별약관(B)는 동시에 가입할 수 없다.

특별약관(A)	특별약관(B)
식중독 진단비(2일이상 입원) 특별약관	여름철 식중독 진단비(2일이상 입원) 특별약관
음식매개세균성장염진단비 특별약관	여름철 음식매개세균성장염진단비 특별약관
기후성질환(온열질환)진단비 특별약관	여름철 기후성질환(온열질환)진단비 특별약관
기후성질환(한랭질환)진단비 특별약관	겨울철 기후성질환(한랭질환)진단비 특별약관

너. 아래의 특약은 보험기간을 1년 단위 또는 1개월 이하로만 운영한다.
1) 기후성질환(온열질환) 진단비 특별약관
2) 기후성질환(한랭질환) 진단비 특별약관

더. 하나의 계약에 있어서 다음의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다.
- 여름철 식중독 진단비(2일이상 입원) 특별약관
- 여름철 음식매개세균성장염진단비(4일이상 입원) 특별약관

러. 아래의 특별약관의 최고 가입금액 한도는 다음과 같다.

특별약관	최대 보험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500만원
심급별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경찰조사포함, 자기부담금 50%) 특별약관	1,500만원

머. "상품다수구매자단체계약 특별약관" 적용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다수구매자(피보험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보장내용으로 상품을 설계하여야 한다.
(불완전판매 우려가 적고 보험사고 입증 및 보험금 지급절차가 단순한 보장. 예:상해사망)

- 보험료는 계약자(상품판매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보험료 부담이 피보험자에게 전가되지 않음을 계약자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인수)
-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주요 보장내용을 설명하고 피보험자 확인을 받은 경우 인수한다.
  (가입 전 설명·확인, 사전설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후 설명·확인)